

#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8일

**HRDK**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## 1. 선발예정인원

일반응시자	제1차 시험	최소합격인원의 3배수	동점자는 합격처리
	제2차 시험	최소합격인원 200명	
특허청경력자	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		

## 2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 분	원서접수	시험장소 공고	시행지역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제1차 시험	1. 16.(월) 09:00 ~ 1. 20.(금) 18:00	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	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	2. 18.(토)	3. 22.(수)
제2차 시험	4. 24.(월) 09:00 ~ 4. 28.(금) 18:00	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	서울	7. 21.(금) ~ 7. 22.(토)	10. 25.(수)

※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: 2023. 4. 24.(월) 09:00 ~ 4. 28.(금) 17:00

### 3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#### 가. 시험과목(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)

구 분	시 험 과 목			시험방법
제1차 시험	① 산업재산권법(특허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,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) ② 민법개론(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) ③ 자연과학개론 ④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		객관식 필기시험
제2차 시험	필수 과목	① 특허법(조약을 포함한다) ② 상표법(조약을 포함한다) ③ 민사소송법		주관식 논술시험
	선택 과목 1	① 디자인보호법(조약을 포함한다) ④ 기계설계 ⑦ 유기화학 ⑩ 회로이론 ⑬ 데이터구조론 ⑯ 약제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	② 저작권법(조약을 포함한다) ⑤ 열역학 ⑧ 화학반응공학 ⑪ 반도체공학 ⑭ 발효공학 ⑰ 약품제조화학	
		③ 산업디자인	⑥ 금속재료	
		⑨ 전기자기학	⑫ 제어공학	
		⑮ 분자생물학	⑱ 섬유재료학	

※ 기활용된 문제, 기출문제 등도 변형·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

#### 나. 과목별 시험시간

시험구분	교시	시 험 과 목	입실완료	시 험 시 간	문항수	
제1차 시험	1교시	① 산업재산권법	09:00	09:30~10:40(70분)	과목별 40문항	
	2교시	② 민법개론	11:00	11:10~12:20(70분)		
	3교시	③ 자연과학개론	13:20	13:40~14:40(60분)		
제2차 시험	1일차	1교시	① 특허법	09:00	09:30~11:30(120분)	과목별 4문항
		2교시	② 상표법	12:50	13:30~15:30(120분)	
	2일차	1교시	③ 민사소송법	09:00	09:30~11:30(120분)	
		2교시	④ 선택과목(1과목)	12:50	13:30~15:30(120분)	

## 4. 법령 등 출제기준일

### 가. 제1차 시험 법령(조약 포함)과 판례의 출제기준일

- 법령(조약 포함) : 제1차 시험일(2023.2.18.)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(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)
- 판례 :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

### 나. 제2차 시험 법령(조약 포함)과 판례의 출제기준일

- 법령(조약 포함) : 제2차 시험일(2023.7.21.~7.22.)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(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)
- 판례 : 2023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

## 5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### 가. 응시자격(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)

- 최종 합격자 발표일(2023. 10. 25.) 기준, 「변리사법」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※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

## 나. 결격사유(변리사법 제4조)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.

- 1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3)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
- 4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5)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)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  - 나)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다) 「변리사법」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라)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6. 합격자 결정

### 가. 제1차 시험(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)

-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과와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
## 나. 제2차 시험(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)

### ○ 일반응시자

-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,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,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. 다만,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
※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(셋째 자리 이하 버림) 계산

### ○ 특허청 경력자

-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

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(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)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-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

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(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)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

## 다.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(변리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등)

-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·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

## 7. 시험의 일부면제

가.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3년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면제(별도 서류제출 없음)

<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</li> </ul> </li> <li>■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"재응시자"로 선택하여 접수</li> <li>-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(결시 포함)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,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</li> <li>-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,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(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,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입력)</li> </ul> </li> </ul>	

나.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(변리사법 제4조의3)

구 분	시 험 면 제 유 형	비 고
제1차 시험 면제	▶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	-
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	▶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	면제자는 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(특허법을 제외한다)을 면제

○ 경력 산정 기준일 : 제2차 시험일 첫날(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)

다.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

○ 제출 서류 : 특허청 경력증명서, 서류심사신청서 **【별지 제1호 서식】**,  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**【별지 제2호 서식】**

※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

※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

○ 제출 기간 : 2023. 4. 24.(월) 09:00 ~ 2023. 4. 28.(금) 17:00

- 경력서류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한 경우, 제2차 시험 전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

※ 제2차 시험 전일(2023. 7. 20.)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무효(0점) 처리

○ 관련 유의사항

-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 일부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 자격·징계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, 요건 미충족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(징계위원회 결과 통보가 수수료 환불 마감일 이후(시험시행일 10일 전)에 올 경우,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)
- 경력에 의한 시험일부면제자의 경우,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후 시험응시가능하나 심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무효(0점)처리
-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하여 경력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, 서류제출 면제

○ 제출처

기관명	주소	우편번호	담당부서	연락처
서울지역본부	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	02512	자격시험3부	02-2137-0558
부산지역본부	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	46519	자격시험3부	051-330-1974
광주지역본부	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	61008	자격시험1부	062-970-1767
대전지역본부	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	35000	자격시험1부	042-580-9140
대구지역본부	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	42704	자격시험1부	053-580-2385

※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 및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

## 8. 영어능력검정시험

가.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

○ 기준점수

시험명	TOEFL		TOEIC	TEPS	G-TLP	FLEX	IELTS
	PBT	IBT					
일반응시자	560	83	775	385	77(level-2)	700	5
청각장애인	373	41	387	245	51(level-2)	350	-

※ 청각장애인(2, 3급)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. 다만,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

○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

※ 2021. 1. 21. ~ 2023. 1. 20.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

-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, 정부기관 · 민간회사 · 학교 등에서 승진 · 연수 · 입사 · 입학 · 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
-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,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
- ※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 제출(exam@hrdkorea.or.kr) 및 유선연락(052-714-8389)

#### 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법

- TOEFL, FLEX, IELTS 및 국외취득 성적: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,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
- TOEIC(국내), G-TELP, TEPS :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로 제출(사전제출 가능)

#### <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>

- 큐넷 메뉴 : 변리사 홈페이지 ⇨ 마이페이지-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⇨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⇨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⇨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⇨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⇨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⇨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⇨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
- 승인 내역은 변리사 홈페이지-마이페이지-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
-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

- 공인어학성적의 위 · 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(0점)처리 되며, 「변리사법」 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
-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**2023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**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

#### <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>

-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3. 2. 17.(금)까지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지에정
-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,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제출한 경우에는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'마이페이지-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'에서 확인가능



## 9. 응시원서 접수

### 가. 접수기간

- 제1차 시험 접수
- 1차 시험 접수: 2023. 1. 16.(월) 09:00 ~ 1. 20.(금) 18:00 [5일간]
- 2차 시험 접수: 2023. 4. 24.(월) 09:00 ~ 4. 28.(금) 18:00 [5일간]
- ※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: 2023. 4. 24.(월) 09:00 ~ 4. 28.(금) 17:00

### 나. 접수방법

- 큐넷(www.Q-Net.or.kr)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

#### <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면제자 공통사항 >

- 공단 국가자격시험(www.Q-Net.or.kr)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
-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(JPG, JPEG 파일, 사이즈 : 90×120 이상, 300DPI 권장, 200KB 이하)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(단, 기존 Q-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)
- ※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
- ※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(전국 공단지부, 지사)

-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
-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
-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

### 다. 수수료 납부

- 응시수수료 : 제1차 및 제2차 각각 50,000원
-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- ※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
### 라. 수수료 환불(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)

-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
-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응시수수료 전액
-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응시수수료 전액

○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

※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
○ 사후 환불(관련 증빙자료와 환불신청서 작성·제출)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

-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

-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

-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

-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(재난문자,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)

#### 마. 수험표 교부

○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
○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

#### 바. 원서접수 기간 경과 후 접수내용 변경 불가

○ 선택과목, 시험의 면제신청, 시험장소,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 변경

-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종료(2023.4.28.(금) 18:00) 후에는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등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

## 10. 응시편의 제공

### 가.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

-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
  -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 (7페이지 기관목록 참고)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
  -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, 상지장애로 구분
  -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의3) 의사진단서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, 소견서 불인정)
-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(병원급 의료기관)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임산부는 의원급·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,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- 기타,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'유형별 편의 제공 적용 기준' 참고

#### <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>

1.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2.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(불편사항) 등
3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4. 진단서 유효기간
  -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
  - 단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따름

※ 유형별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## 나.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

<b>&lt;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&gt;</b>					
장애 유형		편의 구분	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	작업형 실기시험	제출서류
시각 장애	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7배 연장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음성지원컴퓨터 - 문제지대독 - 점자 문제지 - 확대 문제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 문제지대독	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 - 확대 답안지 - 점자 답안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경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확대 문제지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해당 없음	
		답안작성 방법	- 확대 답안지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뇌병변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 간격 조정)	해당 없음	
지체 장애	(1) 상지 중증 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(2) 상지 경증 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(3) 하지 (장애정도 구분 없음, 척추장애 * 포함)	시험시간	- 일반 수험자와 동일	- 시험시간 1.1배 연장 ※ 단,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	①,②,③호 중 하나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 (좌석 간격 조정)	해당 없음	

	(4)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시험시간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- (1) 또는 (2)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+ (3)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해당 없음	
청각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보청기 사용 -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-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- 별도 시험실 배정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신장·신장 장투유루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자	일시적 신체장애	편의제공 사항 전반	-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	④호
	과민성대장증후 군 과민성방광증후 군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
	임신부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④,⑤호 중 하나

※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※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
※ 제출서류

-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.
-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(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) 각 1부.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.
-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.  
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소견서 불인정, 유효기간 필요) 원본 1부.
-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(예시)

•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(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+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)  
 ⇒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[표준시간(60분) + {(60분)\*0.3}=78분]  
 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[(60분\*0.1)=6분] = 84분

## 11.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
### 가.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

- 제1차 시험 : 2023. 2. 18.(토) ~ 2. 24.(금) [7일간]
- 제2차 시험 : 2023. 7. 22.(토) ~ 7. 28.(금) [7일간]

※ 제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, 문제에 대한 의견 접수만 가능

○ 방 법 : 국가자격시험([www.Q-Net.or.kr](http://www.Q-Net.or.kr)) 변리사 홈페이지

### 나. 공개 및 신청방법 :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

※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

## 12. 합격자 발표

### 가. 발표 일시

- 제1차 시험 발표일 : 2023. 3. 22.(수) 09:00
- 제2차 시험 발표일 : 2023. 10. 25.(수) 09:00

### 나. 발표 방법

-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([www.Q-Net.or.kr/site/patent](http://www.Q-Net.or.kr/site/patent)) : 60일간
- 자동응답전화(ARS(1666-0100)) : 4일간

## 13. 수험자 유의사항

### 가. 제1·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

- 1)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, 위·변조, 기재오기,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.

※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

※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

- 2)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(단, 시험실 출입은 불가)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표,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
※ 매 교시 **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**

※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

- (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)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(유효기간 이내인 것)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), ②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,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,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, ④ 여권, ⑤ 공무원증(장교·부서관·군무원신분증 포함),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, ⑦ 국가유공자증, ⑧ 국가기술자격증\*(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) \*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,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
- (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) 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, ② NEIS 재학증명서(사진(컬러)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되고,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)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,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, 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- (미취학 아동)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“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”,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- (사병(군인))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

- (외국인) ① 외국인등록증,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③ 영주증

※ 신분증(증명서)에는 사진, 성명, 주민번호(생년월일),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(없는 경우 불인정)

※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, 녹화·촬영본,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

※ **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**

- 3)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- 4)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

※ '시험포기각서'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**무효처리**

※ 단, 설사/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,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

- 5) 일부교시 결시자, 기권자, 답안카드(지)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6)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(0점)처리하고,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7)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, 부정행위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(0점)로 하고,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8)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, 스마트워치 등 전자·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- ※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  - ※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
- 9)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]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금속(전파)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(0점)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  - ※ 휴대폰은 배터리 전원OFF(또는 배터리 분리)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
- 10)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11)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,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- 12)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- 13)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 
변리사 홈페이지(<http://www.Q-Net.or.kr/site/patent>) 공지사항에 게시된 “유형별  
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※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편의제공 대상  
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(응시편의 제공 불가)
- 14)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 
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5)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 지  
참하시기 바라며,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  
입이 가능하나,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.
- 16) 기타 시험일정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 
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 
귀책입니다.

#### 나.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
- 1) 답안카드에 기재된 ‘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’을  
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- 2)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(유의사항)에 따라 답안  
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,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 
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(A형 공통)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3)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 
인쇄되어 있습니다.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 
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.  
※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
- 4) 답안카드 기재·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 
※ 지워지는 사인펜 사용불가
- 5)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 
수험자의 부주의(답안카드 기재·마킹착오, 불완전한 마킹·수정, 예비마킹, 형별착오  
마킹 등)로 판독불능,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 
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  
※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,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(단, 답안 이외 수험번호

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)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

※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

6) 제1차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## 다.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

1)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'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2) 수험자 인적사항·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.(그 외 연필류, 유색필기구, 두가지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)

※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

※ 지워지는 펜 사용불가

3)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,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.

4)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,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5)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(SD카드포함)를 제거, 삭제(리셋, 초기화)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.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
※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(초기화 이후 세팅) 방법숙지

★ 변리사 자격의 엄정·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,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([www.Q-Net.or.kr/site/patent](http://www.Q-Net.or.kr/site/patent))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(1644-8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**【별지 제2호 서식】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**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공단” 이라 함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에 따라,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 포함)를 수집·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특허청 경력사항	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 (면제서류심사)	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(준영구)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    동의     미동의

### 2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

제공받는 자	수집·이용 항목	제공 목적	보유기간
특허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성명, 주민등록번호</li> <li>▪ 특허청 경력사항</li> </ul>	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업무처리 (응시·면제자격 서류심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허청 : 국가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(준영구)</li> </ul>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자격시험 응시 또는 면제를 위한 서류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    동의     미동의

### 3. 동의없이 수집·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

개인정보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<u>주민등록번호</u> , <u>외국인등록번호</u> , <u>여권번호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험의 시행</li> <li>▪ 시험 합격자의 관리</li> <li>▪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허청 : 국가자격시험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(준영구)</li> </ul>

※ 수집근거: 변리사법 시행령 제2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·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인)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

【별지 제3호 서식】 성적확인동의서(일본 TOEIC 성적 취득자)

## Authorization

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\_\_\_\_\_ to confirm for the TOEIC Committee / ICF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. On my request,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.

First name: \_\_\_\_\_

Family name: \_\_\_\_\_

Date of birth: \_\_\_\_\_

Test site: \_\_\_\_\_

Test date: \_\_\_\_\_

Test application (admission) number: \_\_\_\_\_

Address \_\_\_\_\_ on \_\_\_\_\_ test \_\_\_\_\_ application \_\_\_\_\_ form:

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: \_\_\_\_\_

### ● TOEIC Score

Listening: \_\_\_\_\_

Reading: \_\_\_\_\_

Total: \_\_\_\_\_

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:

TOEIC Committee / ICF

#56-15 Jongno 2 ga, Jongno-gu, Seoul, Korea 110-122

E-mail: [check@toeic.co.kr](mailto:check@toeic.co.kr)

Telephone number: 82+2 2280-7294 / Fax number: 82+2 2280-7369

Signature of candidate, as it appears on passport: \_\_\_\_\_

Date of Authorization: \_\_\_\_\_

*Unless renewed,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,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.*

【별지 제4호 서식】 변리사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신청서

## 변리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

### 1. 수험자 서약사항

본인은 영어시험성적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, 이 제출서 및 붙임자료(영어시험성적표)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2. 수험자 인적사항

성명		연락처	
주민등록번호	-	휴대전화번호	

### 3. 영어시험관련 내용 (TOEIC(국내), G-TELP,TEPS 성적은 온라인다이렉트(큐넷)로만 제출 가능)

시험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TOEFL <input type="checkbox"/> TOEIC(일본) <input type="checkbox"/> TEPS <input type="checkbox"/> FLEX <input type="checkbox"/> IELTS	시행국가	
수험번호		취득점수	
시험일자	. .		

### 4. 제출서류 내역

제출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영어시험성적표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적확인동의서
------	---

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 영어 과목 합격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을 붙임 서류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: (인)

붙임 : 영어시험 성적표(원본) 등 부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

